

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61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5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(안 제2조제1호나목)
: 전임전문직 공무원 → 일반임기제 공무원
-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 마련(안 제2조제1호다목)
-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 상향 조정(안 제2조제2호): 월 50만 원→ 월60만 원

나. 그 밖에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별첨)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생략 (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)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

나) 경기도 : 인사과

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 이라 한다)” 을 “지방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른” 을 “따라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 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“전임전문직” 을 “일반 임기제” 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보건진료직렬 공무원:” 을 “보건진료 전담 공무원: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50만원” 을 “60만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,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총무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총무과장 이경희
	팀장 직위·성명	인사팀장 현계자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유지수(☎2104)

[별표 1]

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수당 지급액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

비고 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 . 치과의사 .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

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직급별 근무연수별	5급	6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이하	월 973,000원이하
4년 이상	월 1,306,000원이하	월 967,000원이하
3년 이상	월 1,300,000원이하	월 961,000원이하
2년 이상	월 1,295,000원이하	월 956,000원이하
2년 미만	월 1,289,000원이하	월 950,000원이하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장려수당 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, 급수, 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	50,000원 이하
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	180,000원 이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<u>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----- <u>지방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 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<u>따른</u>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	<p>제2조 (의료업무 등의 수당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----- -----.</p>
<p>1.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. (생략) 나. <u>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</u>: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. <u>보건진료직렬 공무원</u>: 월 25만원</p>	<p>1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일반임기제</u> ----- ----- 다. <u>보건진료 전담공무원</u>: ----- -</p>
<p>2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위생 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: 월 <u>50만원</u>(단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의직렬</p>	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60만원</u>----- -----</p>

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
한정한다)

제3조 (장려수당) 영 별표 9 제8호 다
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의하여 상
수도의 시설관리, 급수, 정수 및 지
원,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
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
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
과 같다.

[별표 1]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갑 지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
을 지	월 995,000원 이하	월 914,000원 이하
병 지	월 1,091,000원 이하	월 1,010,000원 이하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
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
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※ 급지의 구분

- 갑지 : 도 및 시
- 을지 : 병지를 제외한 경기도내 군
- 병지 : 여주, 연천, 포천, 가평, 양평(5)

[별표 2]

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근무년수별	등급별	
	가 급	나 급
5 년 이 상	월 1,312,000원이하	월 973,000원이하
4 년 이 상	월 1,306,000원이하	월 967,000원이하
3 년 이 상	월 1,300,000원이하	월 961,000원이하
2 년 이 상	월 1,295,000원이하	월 956,000원이하
2 년 미 만	월 1,289,000원이하	월 950,000원이하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
통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

제3조 (장려수당) -----

----- 따라 -----

----- 사람 -----

[별표 1]

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
지급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월수당 지급액	월909,000원	월818,000원

비고 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
사람으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
· 치과의사 · 한의사로 한다.

<삭 제>

[별표 2]

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

근무년수별	직급별	
	5급	6급
5 년 이 상	-----	-----
4 년 이 상	-----	-----
3 년 이 상	-----	-----
2 년 이 상	-----	-----
2 년 미 만	-----	-----

[별표 3]

장려수당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, 급수, 정수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	50,000원 이하
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	180,000원 이하

장려수당 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-----따라-----	-----
-----사람-----	-----
-----	-----
-----사람-----	-----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제14조(특수업무수당)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되,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
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9]

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(제14조 관련)

구분	수당명	지급대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	2. 의료업무 등의 수당	가. 의무·약무·간호직·보건진료 전담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의무·약무·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)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 및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·근무하는 공무원	1) 의무직렬 공무원,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: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) 약무직렬 공무원: 월 70,000원 3)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: 월 50,000원
		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[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 및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]	월 350,000원 (광역시·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·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,000원 초과 월 600,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)

- | | | |
|--|--|--|
| | | 1)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 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
2)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
3)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|
|--|--|--|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

제16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)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·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제19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)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람들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.

1.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
2.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

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
 - 가.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: 별표 1의 지급구분표
 - 나.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: 별표 2의 지급구분표
 - 다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: 월 25만 원
2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 위생 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: 월 50만원(단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)

제3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 제8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의 시설관리, 급수, 정수 및 지원,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1]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갑 지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
을 지	월 995,000원 이하	월 914,000원 이하
병 지	월 1,091,000원 이하	월 1,010,000원 이하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※ 급지의 구분

- 갑지 : 도 및 시
- 을지 : 병지를 제외한 경기도내 군
- 병지 : 여주, 연천, 포천, 가평, 양평(5)

[별표 2]

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
5 년 이 상	월 1,312,000원이하	월 973,000원이하
4 년 이 상	월 1,306,000원이하	월 967,000원이하
3 년 이 상	월 1,300,000원이하	월 961,000원이하
2 년 이 상	월 1,295,000원이하	월 956,000원이하
2 년 미 만	월 1,289,000원이하	월 950,000원이하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

장려수당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, 급수, 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	50,000원 이하
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	180,000 원 이하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 인상(월 50만원 → 월 60만원)

다.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(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(예상 연평균 비용 1,200천원)

2. 비용추계 : 미작성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자치행정국 총무과 과장 이경희 팀장 현계자